

“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
(경유)

참 조

제 목 '23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



협회는 업계 권익 보호 및 발전을 위한 '2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및 회원사 복리증진 등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을 취합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 제안범위

- '23년 사업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법령 및 정책·제도 개선사항, 회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 등 일체

□ 제출기한 : '22.12.7(수)까지

□ 제출방법

- 붙임1의 '23년 사업계획(안)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사업계획 추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: koras01@naver.com)

- 붙임 : 1. '23년도 사업계획(안) 1부.
2. '23년도 협회 사업계획 제안서 1부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담당 권병문 부장 강한서 본부장 이원표 사무총장 해외출장 회장 박하준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 - 585호 (2022.11.22) 접수

우 067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뒀로27길 2(일동제약빌딩 3층) / www.koras.org

전화 02-3476-7787 전송 02-3476-8464 /koras01@naver.com / 공개

2023년 사업계획(안)

구 분	주요 내용
<p>1. 법령 및 정책·제도 개선</p>	<p>가. 순환골재 개념 명확화 및 외부보관기준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순환골재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명시적 규정과 사업장 외부 보관기준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('22.5.13)한 건설폐기물법 개정완료 ※ 막구조물 및 옥내화 시설 설치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통한 외부보관 기준 마련 포함('사'목 참조) <p>나.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에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건설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추진(건설폐기물법 개정) ※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('21.6.18)한 건설폐기물법 개정안 검토 시 해당 내용 반영추진 등 ○ 페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확대 등(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) ※ 환경부가 추진 중인 페아스콘 순환골재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지원 등 <p>다. 건설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(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) ○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강화(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) ○ 혼합건설폐기물의 가연물함유량 비율규정 현실화 등(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) ※ 환경부와 합동으로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가연물함유량 비율규정 재검토 추진 ○ 임시차량 사용기준 개선 등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) ※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임시차량 사용기준 및 절차 완화 <p>라.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미수금 발생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공사의 하도급지급 확인(보증)제도 등 타 법 사례 등을 고려하여 민간발주 처리용역의 미수금 발생 근절방안 마련

구 분	주요 내용
1. 법령 및 정책·제도 개선	<p>마.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협의체(환경부, 공단, 협회, 조합 참여)를 통해 업계 애로 사항 해소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– 차량용 GPS 설치·운영 관련 개선 및 유지·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방안 등 <p>바.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「건설폐기물법」 개정(안)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계·환경부 간 합의사항 반영 여부 등 「건설폐기물법」 개정(안)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동향 확인 등 ○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위한 「건설폐기물법」 하위 법령 개정안 환경부 검토동향 확인 및 지원 등 <p>사.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규정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공사용 품질인증 시 투입폐기물 제한(페아스콘) 규정 개정 추진(한국건설기술연구원) <p>아.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(추가 검토예정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막구조물 및 옥내화시설 설치기준 마련 연구용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업계와 환경부 업무협약('21.11.26) 관련 후속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간처리시설 옥내화 방안 등 연구수행(수행 기관 : 협회) 및 관련 기준 마련 검토 등 ※ 업계 현실 및 관련 규제사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치기준 도출 등 2.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(추가 검토예정) <p>자.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건의(안) 관련 환경부 검토 동향 확인 및 업무협의 등 <p>차. 건설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포럼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부와 공동으로 건설폐기물 정책·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
2 정부 위탁사업의 효율적 추진	<p>가.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</p> <p>나. 경력 인정업무(법정기술인력 및 품질관리자 대체인정)</p> <p>다. 수행거리 측정확인 업무(적격업체 평가 시 제출서류 발급)</p> <p>라. 통합전산시스템 제증명서 발급 위변조방지 플러그인 제거 및 유지보수</p>

구 분	주요 내용
	<p>마.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 법정교육</p> <p>바. 순환골재 품질관리 기능심사 업무</p> <p>사. 기술적용시설 설치·가동확인서 및 순환아스콘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</p> <p>아. 순환골재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업무</p> <p>자. 입찰 관련 제증명서 발급업무</p>
<p>3. 업계의 권익보호 및 경쟁력 강화</p>	<p>가. 회원사 고충처리 활동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2B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입찰민원 신속대응, 건설폐기물 불법처리행위 등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실시 등 <p>나. 건설폐기물 처리업 관련 법령개정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회·정부 발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관련 법령 개정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추진 및 대응 <p>다.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MOU 체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 사용 확대를 위하여 정부, 공공 및 민간발주기관 등과 업무협약 체결 추진 ○ 협약체결 후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협력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추진 등 <p>라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정례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 법정교육과 연계하여 추진 <p>마.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원가계산 재산정</p> <p>바. 신기술 인증·검증 취득지원</p> <p>사.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지원</p> <p>아. 건설폐기물 성상판단 및 설계지원</p> <p>자. 녹색21 및 협회일보 발간</p>
<p>4. 업계 신인도 개선</p>	<p>가. 2023 순환골재·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 및 발표대회 개최</p> <p>나.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순환골재 사용 관련 실무교육 추진</p> <p>다. 순환골재 사용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순환골재 관련 매체별 광고 및 언론보도 추진(일간지 기획기사, SNS 채널 운영 등을 통한 순환골재 홍보 콘텐츠 배포 등)

구 분	주요 내용
4. 업계 신인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추진 (자원순환의 날, 우수활용 사례 발표회, 학회 주관 행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자료 배포 등) ○ 순환골재 관련 공공 발주기관 교육 지원 및 홍보, 순환골재 적극 사용 계도문서 조치 등 <p>라. 제7대 임원진 구성에 따른 임원 워크숍 개최</p> <p>마. 중앙회-지회 사무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</p> <p>바. 업계 애로사항 해소 및 유기적 관계 구축을 위한 협회-지회-지방환경청 간 간담회 개최</p> <p>사. 해외 전시·박람회 참관 등 기술교류 추진</p>

[붙임2]

'23년도 협회 사업계획 제안서

업체명 : [담당자 :]

제안 내용

제 목	내 용
(예시) 순환골재 등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	○ 사업계획(안) : 순환골재 등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- (제안배경) 순환골재 등의 사용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필요 - (개선방안) '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'(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522호)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범위 확대 (콘크리트용 순환골재 →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)

※ 사업 제안 배경, 사유, 개선방안 등 상세히 기재 바람